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2,075,297	11,162,259
일반회계	346,122,003	10,383,660
특별회계	25,953,294	778,599
기타특별회계	25,953,294	778,5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90,146	152,704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01,719	24,052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452,325	13,570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00,000	21,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8,871	6,26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594,470	137,83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137,400	124,122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48,000	37,44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8,720,363	261,61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 해당사항 없음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99,84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